

	장학위원회규정	규정번호	3-8-28
		제정일자	2005.11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3차
		소관부서	학생성공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장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2. 장학관련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장학업무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, 학생성공처장, 각 학부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학생성공처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둔다.

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8조(서기) 위원회는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